

인천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501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5017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1274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담당변호사 최진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변론 종결 2021. 10. 20.

판결 선고 2021. 12. 22.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1274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10. 13. 접수 제809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주 겸 이사였던 C의 아내이다.

나. 원고는 김포지역의 영업 확장을 위하여 영업소를 개설하되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2. 4. 1. C 및 K(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김포시 T에 L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그러나 L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C 등이 원고와 협의 없이 M가 운영하는 N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L를 원고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2014. 7. 30.경 C 등에게 원고와 L를 분리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원고와 L가 2014년 7월말경 실질적인 별개의 사업체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6779,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5882), 항소심 법원은 2020. 8. 26. L가 2014년 7월 말경 원고로부터 분리·독립되었다는 이유로 'C은 원고에게 L의 분리에 따른 정산금으로 414,949,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24. C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다265952)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2015.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3.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모두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정산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L가 원고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분리되면서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모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단축급부 형태로 C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옳지 않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민호

판사김범진

판사김현

별지